사람들의 용인
People's Yongin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안)

2017.03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Ⅰ. 기존건축물 철거 시 절차

1) 신축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에 따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붙임1]**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주택의 경우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 259-0204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대상〉
-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
-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길이의 합이 80m 이상

2) 인근 건물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철거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 계획서**[붙임2 참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나.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다.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3)「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붙임3]** 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고소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공사
-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환경관리팀 ☎ 324-6285~6 】

4)「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공사 사전 신고 대상인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붙임4]**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시행규칙 57조(비상먼지 발생사업)]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인 공사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
- 지반조성 공사 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공사가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 그 밖에 공사(위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

【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환경관리팀 ☎ 324-6285~6 】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의거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붙임5]**를 하여야 합니다.

6) 석면, 폐기물 등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참고 붙임6]**

7)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건물말소등기신청**[붙임7]**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멸실등기 시 필요한 서류]
- 건물멸실등기신청서
- 건축물대장(말소)등본
-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용인등기소 ☎ 1544-0773】**

Ⅱ. 철거공사 현장 안전관리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합니다.
2)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철거하는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한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중기차량은 평소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중점추진사항】

구 분	중점 관리 사항	주요 실천 사항
시공안전	· **가설비계, 가설울타리** 등의 설치 · **추락·낙하 방지시설**의 설치 · 장비이동, **폐기물낙하** 및 **적재** · **철거장비** 안전 ·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조치 · 시공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시 · 단계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시행
교통안전	· 공사장 내 **진·출입로** 관리 · 공사장 내 장비 운행 · 교통계획 수립	· **안내표지판, 신호수** 배치 · **덤프트럭** 속도제한 · 공사 **안전표지판** 및 **교통 통제시설** 설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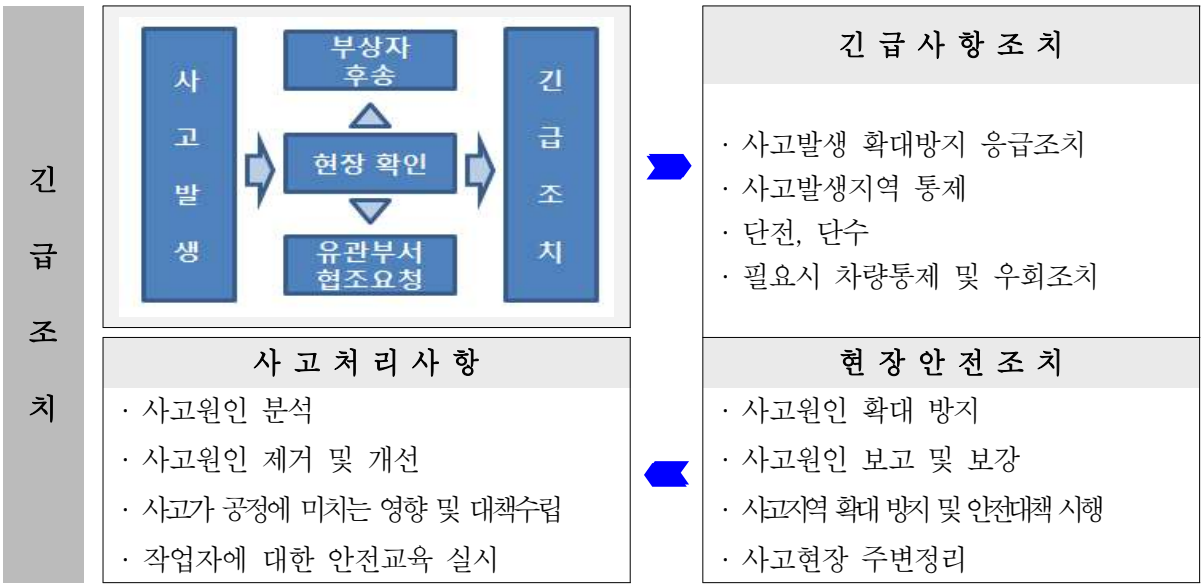
【취약시기 안점점검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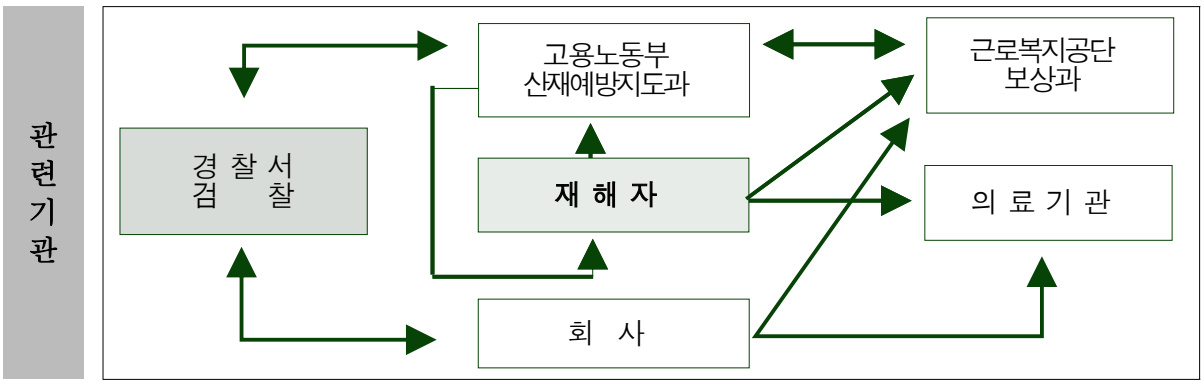
구 분	점검내용	점검항목	관리대책
태풍기 (8-9월)	가시설물안전 공사용 장비	기상예보 주시 안전대책수립 항목 재점검	· 수방조직 및 비상연락망 작성 · 수방자재 인원 장비확보 · 전도우려 장비 가시설물 관리

【비상시 즉각 조치를 위한 현장 상시 준비사항】

구 분	예시
· 비상 시기별 · 단계별 대처계획 및 절차도 · 비상연락 보고 체계도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비상사태 시 긴급자재 장비 인력 동원 계획표 및 연락망 · 담당분야별 조직표 및 담당업무	

【사고발생 시 대책】





【재해처리 방법】

처 리 순 서	조 치 사 항	비 고
긴 급 처 리 → 재 해 조 사 → 원 인 강 구 → 대 책 → 실 시 → 평 가	· 피해 발생한 기계·설비의 정지 · 피해자 응급처리 · 2차 피해방지 · 재해발생 현장보존	· 안전교육 시 응급조치 요령 숙지
	· 사상자 보고 · 잠재피해요인 분석 - 6하원칙	· 경찰서 : 사망인 경우만 신고 · 중대사고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24시간 이내 신고
	· 직접원인 : 사람, 물(物) · 간접원인 : 관리적 사항	· 사고원인 제거 및 개선
	· 동종재해방지 · 유사재해방지 · 대책수립	
	·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	
	· 평가 후 시정	

【교통처리 계획】

○ 주변도로 교통처리 준수사항

구 분	도로 통행차량 및 조치사항	예 시 도
사고예방	· 공사구간 접근차량 안내에 필요한 **교통 신호수배치** · 현장외부에 건설자재 적치 및 장비 정차 금지	
통행불편 감 소	· 도로는 **필요시 최소차선 차단** · 교통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행자 동선을 유지	
차량유도	· 주 출입구 측은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차량 진출입 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유도	

○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주변 안전조치

구 분	도로 통행차량	조치사항	예 시 도
공사장 내	· 공사장 내 **출입차량의 속도제한** 등 조치 필요	· 10km 이하	
공사장주변	· 현장 주출입구 **주변 도로 차량통제**	· 신호수 배치 · 40km 이하	

○ 공해방지 중점관리 계획

구 분	중 점 관 리 항 목	예 시
대 기 질 (비산먼지)	· Crusher(압쇄)장비 및 덤프트럭 등 **비산먼지** 관리 · 철거 시 **비산 분진** 방지 · 장비 운전 중 **배기가스** 관리	
수질오염	· **청소** 및 **세륜 살수시설**에 의한 오염 관리	
소음진동	· Crusher(압쇄)장비 및 덤프트럭 등 **장비소음** 관리 · 철거 시 소음대책→**작업시간변경**(AM8시~PM5시작업)	
폐 기 물	· 장비폐유 → 폐유**저장**시설 · 철거물, 생활폐기물 → 산업폐기물 **전문 용역사**에 의뢰 · 내장재 철거 시 **분리수거**	

【비산먼지 저감계획】

구 분	방 지 대 책	비고
방진막 설치	· 콘크리트 철거 시 건물 **외부비계 방진막** 설치 · 분체 상 야적물 **방진 덮개 보양** · 저장물질의 함수율은 7~10% 유지하도록 **살수작업** 실시	
살수시설 및 양생포깔기	· 살수시설 : Crusher장비 운전 시 **살수시설가동** (살수압 3kg/㎡이상) · 출입구주위 20m 양생포를 깔아 **비산먼지** 예방 · **살수**는 분진 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시행	
상하차 및 운반	· 풍속이 평균 **초속 10m/sec** 이상일 경우 **작업 중단**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가 되도록 적재 및 덮개 설치 · 상하차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살수 시행**	

【공사장주변 관리계획】

구 분	중 점 관 리 항 목	관 리 대 상	예 시
소음·진동	· **소음장비**(압쇄기,굴삭기, 발전기 등) · **차량 소음**(덤프트럭, 운반장비 등)	· **가설 방음막** 설치 · **저소음·저진동** 장비선정 · 작업시간변경 (AM8~PM5시작업)	
교통장해	·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처리** · **교통방해,** 통행금지 · 도로파손, 배기가스	· 작업시간의 제한 · **교통정리** : 유도원배치 · 통행안전시설 및 안전통로 확보	
기타불안감	· **비산분진, 소음, 진동, 악취** · **공사용장비**의 출입	· 작업시간 (AM8시반~PM5시 작업) · **주민 홍보 철저**	

【해체공사】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이나 가연물은 사전에 철거합니다.

3)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에서 지지상부 순으로 하고 위층 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하고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합니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하며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5) 철거 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 압쇄기 중량 등 시방서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이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
- 압쇄기의 설치 및 해체는 숙련공이 하여야하며,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수시 보수·점검하여야 합니다.
-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합니다.
-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며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카롭게 합니다.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

1) 건설폐기물 처리 관계자는 폐기물의 재생 이용 시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다음의 순서로 검토합니다.

· 설계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가능한 적게 합니다.

· 부득이하게 발행할 때에는 재성하도록 하여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것을 줄입니다.

· 재생 이용이 불가능 한 것은 가급적 중간처리를 행하여 매립처 분량을 줄입니다.

3)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부산물의 중량, 형상,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합니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폐기물 분류 및 처리】

구 분	중 점 관 리 항 목	예 시
폐콘크리트 폐벽돌	· 콘크리트, 폐벽돌 집토 후 위탁처리	
폐철근, 잡철류	· 규격별 정리하여 보조재 활용 · 발생최소화 및 수거 후 고물상에 매각	
폐목, 합판류	·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가연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 허가업자 위탁처리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면허 • 지정 •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제2항 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붙임2]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table>
<tr><td rowspan="4">공 사 개 요</td><td colspan="2">①대 지 위 치</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②구 조</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③규 모</td><td colspan="5">지상 층 / 지하 층, 연면적 ㎡</td></tr>
<tr><td colspan="2">④해 체 기 간</td><td>착 수 일</td><td></td><td>완 료 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철 거 업 체</td><td colspan="2">⑤회사명(대표자)</td><td colspan="2"></td><td>면 허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td><td rowspan="3">해 체 공 법</td><td colspan="2">⑥적 용 공 법</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⑦주 요 내 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⑧해 체 순 서</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사 용 장 비</td><td colspan="7">⑨기 계 의 종 류</td></tr>
<tr><td>명 칭</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수량(사용일수)</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td><td colspan="2">건설폐기물 적치장소</td><td colspan="2"></td><td>건설폐기물 보관방법</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⑩건설폐기물 발생주기</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td></tr>
<tr><td rowspan="2">⑪건설폐기물의 종류</td><td rowspan="2">배출량 (톤)</td><td colspan="2">⑫운 반</td><td colspan="4">⑬처 리</td></tr>
<tr><td>운반자</td><td>운반량</td><td>처리구분</td><td>업소명</td><td>처리방법</td><td>처리량</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공사 현장 안전 조치 계획 (해당항목에 “○”표)</td><td colspan="7">1. 외부비계 ( )</td></tr>
<tr><td colspan="3">2. 방음차단벽 ( )</td><td colspan="4">7. 환기설비 ( )</td></tr>
<tr><td colspan="3">3. 방음시트 ( )</td><td colspan="4">8. 소화기 ( )</td></tr>
<tr><td colspan="3">4. 보호시트 ( )</td><td colspan="4">9. 가스용단설비 ( )</td></tr>
<tr><td colspan="3">5. 소음대책 ( )</td><td colspan="4">10. 양중설비 ( )</td></tr>
<tr><td colspan="3">6. 살수설비 ( )</td><td colspan="4">11. 기 타 ( )</td></tr>
<tr><td rowspan="2">현 장 책 임 자</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소 속</td><td colspan="3">연 락 처(H.P)</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able>

(뒤 쪽)

<작성 요령>

1. ⑤란은 자가 철거일 경우에는 “건물주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해체공사의 공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란은 해체공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⑧란은 해체순서는 층별 및 구조체의 해체순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층별 : 2층→1층, 구조체 : 슬라브→벽→보→기둥 순
5. ⑨란의 “명칭”란은 해체 시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을 기입하고 “수량(사용일수)”란은 장비의 수량 및 사용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⑩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⑪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⑫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⑬란의 “처리구분”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소각·중화·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 쪽)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 공 사 명 칭				
⑥ 공 사 장 소 재 지				
신고명세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 공 사 규 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 업 개 시	작 업 종 료	실 제 작 업 일 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⑫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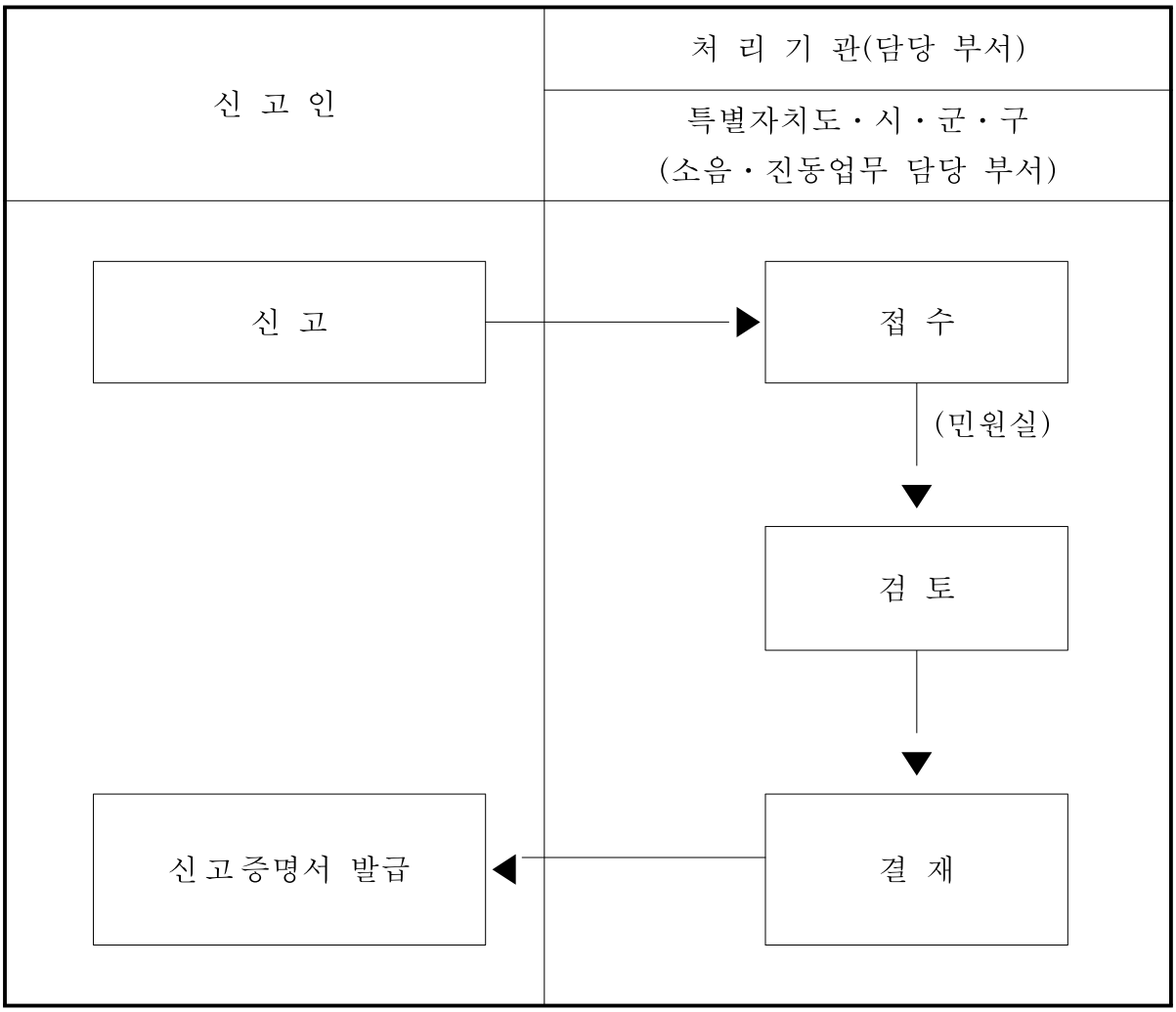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붙임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붙임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자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등 생산량(톤)	사용량 (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9조제1항 [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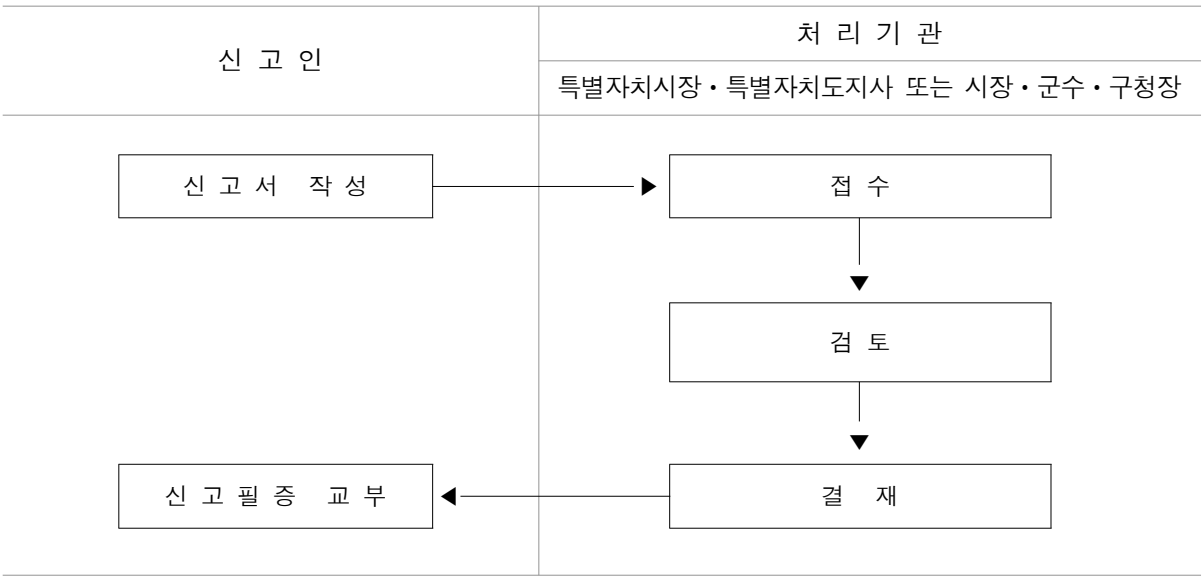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⑤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소각·중화·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1.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7]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건물멸실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③ 등 기 의 목 적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④ 신청인			

⑤ 등 록 면 허 세	금	6,000 원
⑤ 지 방 교 육 세	금	1,200 원
⑥ 세 액 합 계	금	7,200 원
⑦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3,000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⑧ 첨 부 서 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위임장 통 ·건축물대장등본 통	〈기 타〉

년 월 일

⑨ 위 신청인 (전화)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